

## 표지와 같은 면지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법안, 어디까지 왔나? -



# PROGRAM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 ●● 개요

- **제목** :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법안, 어디까지 왔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3. 7. 11.(화) 14:0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및 주관** : 국회의원 정춘숙·김상희·이재정·윤미향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 식순

진행시간	순서	내용
14:00~14:0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전체사회: <b>오영미</b>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14:05~14:30	인사말	• <b>우순덕</b>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 <b>정춘숙</b> 국회의원 • <b>김상희</b> 국회의원 • <b>이재정</b> 국회의원 • <b>윤미향</b> 국회의원
	피해생존자 발언	• <b>김숙희</b> 두레방
14:30~15:00	발제 1	• 국가배상 소송 판결의 내용과 의의, 향후 과제 <b>박삼성</b>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발제 2	• 미군 ‘위안부’ 특별법 입법필요성과 주요내용 검토 <b>오동석</b>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0~15:45	토론	• <b>김은진</b> 두레방 원장 • <b>안김정애</b>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 <b>장석준</b>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과장
15:45~15:55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5:55~16:00		폐회



# CONTENTS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인사말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	1
정춘숙 (국회의원) .....	3
김상희 (국회의원) .....	5
이재정 (국회의원) .....	7
윤미향 (국회의원) .....	9

## 피해생존자 발언

김숙희 (두레방) .....	11
-----------------	----

## 발제

1. 국가배상 소송 판결의 내용과 의의, 향후 과제 .....	15
박삼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2. 미군 ‘위안부’ 특별법 입법필요성과 주요내용 검토 .....	25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1. 김은진 (두레방 원장) .....	35
2.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	41
3. 장석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과장) .....	47

## 부록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51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62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65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이자 21년간 평택 안정리 기지촌 할머니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햇살사회복지회 우순덕 대표입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현장단체들과 연구자들이 합류하여 2012년 8월에 발족하였고, 경기여성연대와 더불어 2020년 5월에 경기도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조례가 제정과 국가상대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의 방치 및 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 및 정당화했다'며 국가에 의한 부당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국회도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과거 여러 차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지촌 여성들을 이중жат대로 애국자, 산업역군, 민간 외교관이라고 추켜세우면서 한쪽으로는 '양공주, 양색시'라며 낙인 찍고 있습니다. 실상 기지촌 여성은 안보와 경제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지촌은 우리 역사의 비굴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지촌은 우리의 무능력과 책임 전가로 힘없고 가난한 여인들이 생존의 경계선에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 당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누군들 점령군으로 와 있는 외국 군대의 몇 푼 안 되는 돈다발에 몸을 의지하고 살고 싶었겠습니까. 누군들 떳떳이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군들 그 소중한 아름다운 소녀 시절의 꿈을 그렇게 짓밟히면서 세월을 보내야겠다고 작정하고 살았겠습니까.

이제 기지촌 여성 노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김상희, 이재정, 윤미향 의원님과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준비해 주신 민변 미군위 박삼성 위원장님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님, 토론해 주실 두레방 김은진 원장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안김정애 대표님, 여성가족부 장석준 권익기반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는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국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여성의 성을 수단화하고 존엄성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산업역군'으로 치켜 세워지면서도, 구금·구타·인신매매·착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과 편견 속에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대법원은 8년 3개월간 진행되었던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책임, 즉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의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고령의 피해 여성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닌堂堂하고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정부·여당도 특별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가 미군 '위안부' 특별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입법을 위한 슬기로운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제자, 토론자께서 주신 말씀들 세심히 살피고,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시는 정춘숙 의원님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 윤미향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으며,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성병관리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미군 위안부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했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그동안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양공주’, ‘유엔 마담’으로 불리며 “자발적 성매매 아니었냐”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사망하기도 했지만,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도 난 만큼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무능이자 책임 방기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주실 오영미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님, 발제를 맡아 주신 박삼성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김은진 두레방 원장님,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님, 정석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과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방안과 입법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정입니다.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경기여성연대·기지촌여성인권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 문제는 과거 국가 안보의 명분으로 폭력과 인권침해를 당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 안보가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 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했고,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으로 기지촌 여성들은 강제 검진·구금·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물론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시기입니다. 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 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또한 관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향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먼저 오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정춘숙, 김상희, 이재정 의원님과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함께해주신 박삼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님,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김은진 두레방 원장님,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님, 장석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과장님께서도 연대와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소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 주도로 관리·운영되어온 곳입니다. 국가는 군사동맹 공고화, 국가안보 강화, 외화 획득 등의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여성들에게 애국교육을 실시하여 성매매를 조장하였고, 강제적으로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고 격리하며 인권침해를 자행해왔습니다.

2014년부터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마침내 지난해 한국 내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상대로 운영된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인정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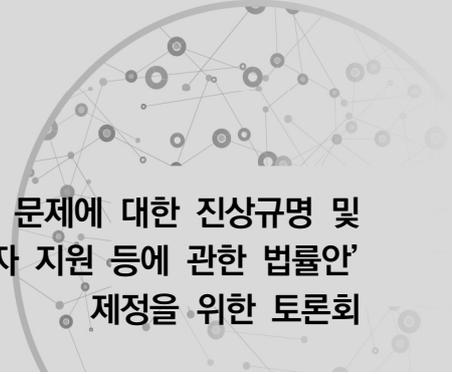
대법원 판결은 집단 성매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자, 그동안 은폐되고 외면받아왔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공식화된 역사적 판결입니다. 정부는 판결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소송을 함께 시작한 122명의 피해자 중 이미 24명의 피해자가 돌아가셨고,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피해 여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노력은 있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 후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번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정춘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 피해 여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이 남긴 문제들로, 피해자분들이 번번이 어려운 걸음을 해주고 계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피해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에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 또한 오늘 토론과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활동에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가폭력의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피해생존자 발언

---

김숙희 (두레방)









# 발제 1

## 국가배상 소송 판결의 내용과 의의, 향후 과제

---

박삼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국가배상 소송 판결의 내용과 의의, 향후 과제

박삼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1. 들어가며

2014. 6. 25. 기지촌 ‘미군 위안부’ 12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018. 2. 28.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 9. 29.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소제기부터 8년만에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후 대법원 선고까지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혹여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던 항소심 판결의 내용이 변경될지 노심초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인정하였고,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였다는 점,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를 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2. 항소심,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

### 가. 항소심 판결의 내용

#### 1) 국가의 위법성 인정 (1) : 국가의 성매매 정당화·조장

##### ① 기지촌 운영·관리의 구체적 목적과 성매매 조장

고등법원은 “기지촌 내 위안부 성매매를 소극적으로 방치·묵인하거나 최소한도의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적극적·능동적으로 외국군의 사기 진작이나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이른바 ‘서비스’)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1961. 9. 14. 경기도가 시행한 「유엔군 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 유동하는위안부의 고정수용을 전제로 업소 장소의 위치나 종업원 수 제한, 영업시설 개선 등에 관한 논의. 공문에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양양 면을 고려'한다는 점, '외화 획득과 국가 예산 절약', '유엔군에게 보다 나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혁명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별지)
- 1971. 6. 14. 용산경찰서장 「미군접객업에 종사하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미군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일부 ... 에게 불쾌감을 조성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일들은 반성하고 시정합니다. 그러한 사소한 사건도 여러분의 적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적들을 돕고 있으며, 이로써 여러분 ... 국내안보는 약화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미군은 여러분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과 파괴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와 함께 당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73. 3. 춘천시 「한미친선협회 조례 공포」: ‘공동관심사’로 ‘1.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내외시설 개선, 위생감독, 2. 성병 보균자 및 업태부의 선도’ 등 열거

### ② ‘애국교육’의 실시와 성매매 정당화·조장

고등법원은 “그 교육의 내용에는 분명히, 원고들을 비롯한 위안부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성병검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가랑이를 벌리지 말라.’라든가 ‘다리를 꼬고 무릎을 세워 이렇게 앉아라.’라는 등으로, 통상 성매매업소 운영자나 포주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시할 만한 사항들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 등이 원고들을 상대로 이를 직접 교육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③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와 성매매 조장

고등법원은 “기지촌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안부들의 성병 치료를 행함에 있어 법령에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등 의료전문가에 의한 진단 등의 합리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토벌, 킨택’ 등의 이름 아래 원고들을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 등의 강제수용시설에 격리수용하거나 신체적 부작용이 클 수 있는 페니실린을 무차별적으로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 국가의 위법성 인정 (2) :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고등법원은 “1977. 8. 19.까지 성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시점까지 기지촌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1977. 8. 19. 이후 격리수용치료행위 :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성

병의심자에 불과한 위안부들을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한 경우, 즉 1) ‘토벌’이라 이름 붙여진 합동 단속 당시 보건증(패스)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정기 성병 검진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곧바로 격리수용한 행위, 2) 외국군은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단 없이 대상자를 격리수용한 ‘컨택’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여전히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해진 강제수용 내지 사실상의 구금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나. 대법원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윤락행위 금지를 규정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판시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한편 이와 별도로 1977. 8. 19. 전에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와 1977. 8. 19. 이후 의료전문가의 진단이 없어 전염병환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는 법령과 인권존중 의무 등을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을 원용하면서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

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이때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한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 선고 전에 계속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 판결의 의미

### 1) 항소심 판결 인정

대법원은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윤락행위 금지를 규정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판시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이와 별도로 1977. 8. 19. 전에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와 1977. 8. 19. 이후 의료전문가의 진단이 없어 전염병환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는 법령과 인권존중 의무 등을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하여 항소심 판결의 주된 내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2) 광범위한 개입을 통한 국가의 위법성 인정

판례에 의하면 “피고는 1971. 12. 22.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였고, 1971. 12. 27. 대통령 행정비서,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 국방부 등 각 부처 차관, 국무총리행정비서 등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정화회의’가 열리기도 하는 등 광범위한 국가의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되었습니다(피고는 1972. 2.경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1972. 7.경 예산 11억 5,000만 원이 책정된 기지촌정화위원회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위 위원회

가 1975년까지 활동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행위, 이에 대한 예산 투입까지 있었고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에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3) 구체적인 문서를 통한 국가의 위법성 인정

위법성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미군 접객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에게’라는 제목의 공문, 1973. 3. 춘천시에서 작성된 ‘한미친선 협의회 조례 공포’라는 제목의 공문 등).

이러한 문서에 의하면 국가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각종 공문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반인권적 행위에 행정체계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의견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sup>1)</sup>

### 4) 소멸시효 항변 배척

특히 대법원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이 의미 있다 할 것입니다.

### 5) 중대한 인권침해 인정

과거사정리법의 목적은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지촌위안부문제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닌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부분은 이미 입법화되어 있는 과거사정리법의 목적등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1)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 여성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서울고등법원(국가배상청구소송 2심)은 1962년 11월 경 지역재건부녀회에 등록된 위안부가 10,640명이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바 있음.

### 3. 향후 과제

#### 가. 관련부처의 기존 의견 근거 소멸

여성가족부는 안 제1조와 관련하여,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하나,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으로, 사법절차 완료 후 제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외교부는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sup>2)</sup>

이처럼 관련부처의 주요 의견은 대법원 계류중이었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미 소송은 확정, 관련 자료 인정, 국가의 위법행위 인정 등이 있었고,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관련부처의 기존 의견의 근거는 소멸되었고, 더 이상 이러한 의견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나. 국가의 입법 의무

과거사정리법의 입법취지에는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바 대법원 확정판결로 기지촌 문제가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 담당 공무원 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는바 이제라도 입법 과정에서 그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위안부피해자법에서는 진상규명과 지원을 주요 내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에서 미군으로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 구조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출발점이었으므로 국가의 입법적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106691]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 12.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인순의 검토보고서 12, 13쪽

## 다. 법안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과 실효성 있는 제도의 필요성

**제6조(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 ①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들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保障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15조(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주택의 우선 공급 및 입주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기지촌 여성”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주한 미합중국군대(이하 “미군”이라 한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이라고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으면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입법이 부재하다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 피해자 확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도 고령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계셨고, 원고들의 경우 대부분 고령으로 생활고,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법제정을 통해 실상을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별세로 생존자는 9명이라는 기사<sup>3)</sup>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3) <한겨레>, 2023. 5. 2.,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생존자 이제 9명」.





## 발제 2

# 미군 '위안부' 특별법 입법필요성과 주요내용 검토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군 '위안부' 특별법 입법필요성과 주요내용 검토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서론

'위안부'는 통상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하지만, 한국전쟁 시기부터 1980년대까지 '위안부'는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다. 미군 '위안부'는 '양공주', '양갈보', '유엔 마담', '유엔 사모님'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 단어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국무회의록, 국회 속기록 및 여러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다(이채린, 2020: 1).

2022년 9월 29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군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sup>1)</sup>을 확정했다.<sup>2)</sup> 재판부는 국가(담당 공무원)가 미군 기지촌을 조성·관리·운영한 행위와 그에 따라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행위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의무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미군 '위안부'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법원이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대규모 중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했음에도 국회는 관련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근간으로 시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임에도 국회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자신을 구제하도록 함과 아울러 법원의 인권침해 확인에도 불구하고 미군 '위안부' 전체의 사안으로서 법적 해결을 피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 의무 불이행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미군 '위안부' 관련 국회의 입법 부작위는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제2문) 위반이다. 입법 재량을 부작위를 통해 남용하면 무능력·무책임의 입법 독재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간략히 살펴봤다.

1) 서울고등법원 2018. 2. 8. 2017나2017700.

2) 대법원 제2부 2022. 9. 29. 2018다224408.

## 2. 미군 ‘위안부’ 인권침해에 대한 입법 문제

미군 ‘위안부’의 인권침해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sup>3)</sup> 박정희 유신헌정은 민간 외교 명목으로 미군 ‘위안부’를 국가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했다(문, 캐서린, 2007).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서부터 기지촌 성매매와 ‘기생관광’을 거쳐 오늘날 내·외국인 성매매 문제까지 역사적 연구가 있다(이나영, 2007a: 39-76; 이나영, 2007b: 5-48).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 차원에서 기지촌 성매매에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관한 연구도 있다(박정미, 2011a; 박정미, 2011b: 35-72; 박정미, 2015: 1-33). 한국전쟁 시기부터 ‘위안부’의 격리와 성병 검진이 밝혀지기도 했다(이임하, 2004: 107-148).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에서 정부의 부작위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① 먼저 일본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③ 배상 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는지다. ④ 다음으로 그 의무 이행이 없으면 당사자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다. ⑤ 마지막으로 정부의 부작위가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기본권의 중대성, 기본권 침해 위협의 절박성, 기본권의 구제 가능성, 작위의 조치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기관의 기본권 구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또는 입법자인 국회와 관계에서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데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그것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했다. 미군 ‘위안부’ 특별법의 제정은 헌법재판소의 관점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다.

① 먼저 미군 ‘위안부’ 문제는 미국의 군대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다. ② 미군 ‘위안부’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성노예’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sup>4)</sup> 한국 정부는 인권침해의 직접적인 가해자인 동시에 미군의 인권침해를 묵인·조장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 ③ 대법원에서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만큼 대한민국은 포괄적으로 미군 ‘위안부’에 대해 배·보상 등 피해자

3) ‘위안부’ 표현 관련하여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발성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군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폭력’ 차원의 성매매를 통한 인권침해인 점에서 ‘위안부’ 용어를 사용한다.

4) 송연옥·김귀옥(2017),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선인, 250쪽; 이체린, 2020: 1 재인용.

구제와 진상규명 등 사후적으로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회의 입법 조치가 없으면 미군 '위안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충분한 배·보상, 진상규명, 명예 회복, 생활 보장, 사회적 기억 등의 부재로 인하여 당사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 ⑤ 미군 '위안부' 특별법은 국가가 불법의 성매매를 조장 또는 강요함으로써 침해된 미군 '위안부'의 인간 존엄과 가치 및 신체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의미이므로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 더욱이 미군 '위안부'는 모두 고령으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므로 기본권 침해의 절박성이 인정된다.<sup>5)</sup> 더욱이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미군 '위안부'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두 법안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sup>6)</sup>

한국 사회는 일제 식민지 시대와 미군정 시기를 거쳐 해방 후 정부 수립 시기, 한국전쟁 시기를 포함한 이승만 정권 시기, 박정희의 5·16 군사 반란과 유신정권,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 반란과 각 정권 시기 등을 거치면서 국가폭력이 난무했고, 민주화 이후 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국가폭력·인권침해 등 과거를 점진적으로 청산하고 있다. 아직도 국가는 과거의 폭력에 대한 청산에 소극적이어서 피해자들을 고통 겪게 하고 있다.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회의 입법은 대한민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미군 '위안부' 특별법 제정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므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피할 수 없는 헌법적 의무다.

### 3. 미군 '위안부' 특별법 내용 검토

2020. 12. 17.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이 제출됐다. 법안과 2021. 2. 18.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수석전문위원 차인순)(아래 "검토보고서")에 참고하여 해당 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작성했다.

5) 2014년 6월 25일 122명의 미군 '위안부' 원고들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을 때는 95명의 원고만 남아 있었다. 24명의 원고가 세상을 떠났다. 시사IN 2022. 11. 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08>>, 검색일: 2023. 7. 2.

6) 19대 국회에서는 2014. 7. 7. 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로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었으나, 2016. 5. 29.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2020. 5. 29.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 1) 국가 배상 청구 소송 관련 입법 시기

검토보고서는 미군 ‘위안부’ 문제는 관련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지 2023년 7월 초 현재 9개월이 지났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 제정 관련 국가배상소송 완료 후 추진하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검토보고서, 12). 여성가족부의 응답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6호)는 어떤 사안을 조사할 것인지가 ‘재량 사항’일 뿐 아니라 신청 사건은 물론 직권 사건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과거사정리법 제2조제2항). 별도 입법이 필요한 까닭이다.

## 2) ‘위안부’ 표현과 정의(定義)

검토보고서는 ‘위안부’ 용어가 일반적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위안부’ 하면 일본군 위안부를 떠올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거기에는 강제 동원의 의미 또한 부여되어 있다. 다만, 조직적으로 성적 학대를 받는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는 공통의 속성이 있다.<sup>7)</sup> 또한 법률 용어는 일상 용어와 다를 뿐 아니라 법률에 따라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법률마다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 조항을 두는 까닭은 개별법에 따라 용어를 달리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에 의하여 동원되어 성적(性的)으로 학대받는 생활을 한 사람’이고, 그 자체로 피해자일 것이다. 강제 동원과 위안부 생활 강요는 인권침해의 중대성을 가증하는 개념 요소다. 그런데 법안은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면서도 ‘미군 위안부’를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동일 범주)이지만, 미군 위안부는 별도로 피해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피해자보다 넓은 범주)으로 이해한 듯하다.

미군 ‘위안부’는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에 종사하는 생활을 한 사람”으로 정

7) 이나영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자발/강제”라는 이분법을 넘어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구조라는 사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입는 피해를 인정했다는 사실, 그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적 범죄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이나영, 2022).

의하면 될 것이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당시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은 '위안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법안 제2조제3호에서 “미군 위안부 피해자”란 “미군 위안부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이거나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성병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정의하면 될 일이다.

### 3) 법안의 적용 범위 문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① 법안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주류판매·유흥행위 및接客행위의 영업'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밀집'의 기준이 불분명한 등 “주한미군기지촌” 정의 중 일부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수정·보완이 필요하고, ② 법안 제2조제2호와 관련하여, 정부의 성매매 조장·방조·묵인, 의무적 성병 검진·치료과정 중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신체적 피해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의는 사법부 판단과 연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③ 법안 제2조제4호와 관련하여, “배우자”는 현재의 배우자인지 피해 당시의 배우자인지 불명확하고, “직계존비속”은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자녀만을 규정할 것인지 피해자 자녀 모두를 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외교부는 ④ 법안 제1조와 관련하여,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부재하다는 점과, ⑤ '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법률명으로 공식화할 경우 동 사안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유사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창출하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①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관련 명확성의 원칙에 대하여 “범죄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관에 의하여 구성 요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금지된 행위와 허용된 행위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60등 참조).”고 판시했다.<sup>8)</sup> 법률에서 개념 규정이 명확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과연 이 법안의 개념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보다 불명확한지는 의문이다. 명확성 원칙의 판단에서도 사안의 의미와 무관하게 자의적인 재량으로 개념 규정을 문제 삼는 것

8) 헌재 2015. 10. 21. 2014헌바59.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해당 개념은 큰 문제가 아니다.

②와 ④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그 결과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미군 ‘위안부’ 문제는 한 사람의 존엄성에 관한 사안이다. 과거에 인권침해가 있었고, 그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없이 현재까지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한다. 예외적으로 피해자와 관련을 고려하여 제외할 여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일본군 ‘위안부’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교부는 자국민의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이미지와 불편한 관계만 신경 쓰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제평화주의 관점에서 군대 관련 인권침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나아가 지구적 평화와 정의(正義) 관점에서 필요하다.

#### 4) 기타 관련 부처 의견에 대한 검토

- 1) 여성가족부는 법안의 이름이 “진상규명과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 점을 상기 하면서, 유사 입법례, 예를 들면 「한센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 회복” 관련 사항 부재 또는 「위안부피해자법」의 목적(제1조)에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 규정 등을 근거로 “명예 회복” 관련 사항의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거 ‘한센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처우와 표현을 고려할 때 해당 법률이 잘못된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미군 ‘위안부’ 대한 잘못된 인식과 처우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명예 회복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 2)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 제6조제3항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운영상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위하여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위원의 수,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한다.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만,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데, 특히 위원 추천의 경우가 문제다. 여·야의 동수 또는 의석수 비례에 따라 추천하는 것은 미군 ‘위안부’ 사안 관련 회복적 정의(正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안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보지 않는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위원회의 성격이 인권침해 구제보다는 미군 ‘위안부’ 심판위원회가 될 우려가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인권적·젠더적·역사적·평화적·사회적·법적 관점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의 회복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 3)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 제12조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현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근거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재외공관에서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을 위해 영사 서비스 제공 중으로, 법안의 피해자 등이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각 재외공관에 피해 관련 신고를 이미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신고처 설치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성가족부 역시 외교부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피해자들이 기존 부서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사안은 피해자에게 신뢰도와 안전감을 주기 위해서 별도의 신고처를 설치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 4)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현행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바, 현행 지원체계와 별도로 지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성가족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사안이 국가폭력에 의한 것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사실의 망각이다. 그것은 결국 불법적인 과거를 삭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는 피해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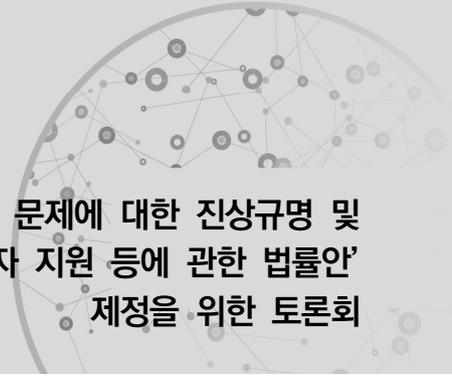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6월 22일에는 파주시 의회가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가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상위법 부재, 피해자 기준 모호, 수급 중복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미군 '위안부'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해의 직접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 그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어야 한다. 국회의 관련 입법 의무는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로 전화했으므로 국회의 관련 입법부작위는 헌법위반이다.

인권 관점의 입법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의 판결에 종속하거나 그 결정 또는 판결조치 뒤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다. 헌법이 명령한 기본적 인권의 확인과 보장 의무의 일차적 수범자는 국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공화국

의 국회의원이 되려면 법안 제출만으로 당사자들을 ‘희망 고문’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 직을 걸고 인권의 옹호자로서 미군 ‘위안부’법 제정을 비롯한 인권 관련 법률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특히 국회가 인권의 보장과 국가조직의 혁신 등 법률제정권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등장하는 현상이다. 민주화 이후 국회는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에 걸맞게 입법했는지 반성할 일이다. 입법의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미군 ‘위안부’ 특별법 제정부터 국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실마리를 풀어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문, 캐서린 H. S.(2007). 동맹 속의 섹스. 삼인.
- 박정미(2011a).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정미(2011b).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7(2). 35-72.
- 박정미(2015). 한국기지촌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 한국사회학 49(2). 한국사회학회. 1-33.
- 이나영(2007a). 금지주의와 국가규제 성매매 제도의 착종에 관한 연구: 남한의 미군정기 성매매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5. 39-76.
- 이나영(2007b).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4). 2007. 12. 5-48.
- 이나영(2022). “[판결비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과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 10. 20.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16658>>, 검색일: 2023. 7. 2.
- 이임하(2004).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 역사연구 14. 역사학연구소. 107-148.
- 이채린(2020). 1950년대 한국정부의 미군 ‘위안부’ 정책과 기지촌 관리. 문학석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2.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토론 1



김은진 (두레방 원장)



## 토론 1

김은진 (두레방 원장)

박삼성 변호사님의 주옥같은 말씀에 모두 동의하며 기지촌여성 당사자를 지원하는 두레방의 입장에서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두레방은 1986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지촌 여성들이 함께 모여 자존감을 회복하며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36년 동안 두레방은 기지촌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문제, 군사주의로 인한 폐해, 기지촌 성산업에 유입되었던 고령의 기지촌 여성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전문상담, 의료·법률지원, 치유 프로그램, 자활사업, 출판·영상자료 제작 등을 하면서 기지촌여성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힘써왔습니다.

아울러 ‘기지촌’이라는 공간이 매우 정치적이고 군사화된 영역으로서, 이들의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과 민관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여성들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뿐 아니라 기지촌여성들의 명예회복과 법제화를 위한 노력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피해 당사자들과 두레방은 ‘기지촌여성의 인권침해 피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교육 및 홍보 등의 목표’를 내걸고 2012년 발족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함께 기지촌여성을 위한 경기도 조례제정, 국가배상소송, 특별법, 국제연대 등 눈부신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렇듯 앞서 걸어간 당사자들과 선배들의 눈물어린 노력이 ‘경기도 조례제정’에 이어 ‘대법원확정판결’이라는 또 하나의 귀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다음 날 모든 언니께 전화를 돌렸습니다. 모든 언니가 “활동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답 끝에 묻어 나오는 느낌은 기쁨보다는 씁쓸함이었습니다. 대법원 확정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막내 활동가가 한 분을 만나 “언니 기쁘시죠?”라는 질문에 “아니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 내 젊음이 아깝고 억울해”라는 대답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동안 품은 가슴속 아픔과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

잃어버린 찬란한 젊음이 보상금 몇 푼으로 절대 보상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노년을 이렇게 만든 국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기에 기지촌으로 흘러올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빠져나올 수 없어 이제는 빈손,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 아픈 몸을 걱정하며 사는 홀몸노인이 된 것입니다.

함께 소송에 참여하셨던 또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천식으로 기침이 심하셨지만 웃는 모습이 무척 예쁘셨던 분입니다. 슬픔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모르고 가신 언니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평생 기지촌여성이라는 아픔을 가슴에 묻고 다른 이들이 알기 원치 않으셨던 분이 결국 외롭게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럴 때면 그동안 두레방에서 전문상담, 의료·법률지원, 치유프로그램, 자활사업, 출판·영상자료 제작 등을 하면서 기지촌여성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힘써왔다고 자부했던 것이 부질없이 느껴집니다.

“기지촌에서 있던 것이 뭐 자랑이라고~ 알리기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과거에 발목 잡혀 낮은 자존감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외로운 싸움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리고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앞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언니들은 앞으로 삶의 남은 부분을 수용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의 경우 대부분 고령으로 생활고,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법제정을 통해 실상을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라는 박삼성변호사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의 관료들과 업주들, 손님인 미군들은 그녀들을 이용했을 뿐 그녀들의 삶을 걱정하거나 책임지지 않았고, 사회와 가정은 낙인찍고, 나쁜 여자로 만들었으며, 제도가 깊어져야 마땅한 책임까지도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은폐된 성매매 공간인 기지촌에서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기지촌여성들은 이용당했고, 버려졌으며, 고쳐지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슴 깊이 안고 지금껏 살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국가배상소송 판결이 된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지촌 성매매 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 역사청산의 문제입니다. 국가폭력, 한미 양국 정부의 반성과 사과 및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언니들도 확실한 명예회복과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기지촌여성특별법’과 ‘미군 상대 소송’입니다.

둘째 당사자 활동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언니들의 평균연령이 70대이기는 하지만 아직 건강하며 역사의식과 투쟁의식이 있는 당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공부하여 당사자 활동가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군사화된 한국 사회의 병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두레방은 여러 정권이 바뀌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도 군사화된 한국 사회의 병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힘들지만 꾸준히 해야 할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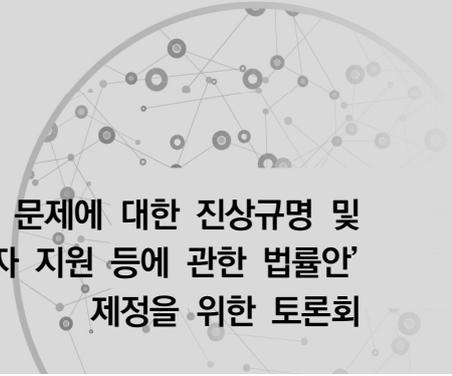
넷째 두레방이 활발하게 펼친 운동은 한국 땅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진정한 안보는 무엇인지 고민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경기여성연대 등 많은 평화운동 단체들과 협력하였습니다. 이런 연대단체들과 함께 일반인 대상의 평화교육, 평화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들과도 폭넓게 연대하여 많은 대중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의 수위를 다층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두레방 아카이브가 시급합니다. 작금 의정부시가 도시재생과 함께 두레방이 거주하고 있는 옛 보건소 건물을 빼빼마을 커뮤니티센터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 두레방은 전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곳에 이의 부당함을 알리고 두레방 건물의 박물관 설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레방 아카이브를 위해 '구술사 강좌'를 개설하여 언니들의 생생한 증언을 남길 준비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여섯째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듯이, 1994년부터 오늘까지, 기지촌과 한국성매매 사업장에는 필리핀 및 동아시아의 이주여성들이 한국정부가 발급해 주는 E-6 비자(예술행사증)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의 기지촌에서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로서 살아가다가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군인 남자친구, 업주와 프로모터, 또는 손님으로부터 임금착취나 체불, 온갖 폭력에 시달리고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70년대 전후 한국 기지촌의 전형이 이주여성에게로 똑같이 복제되는 현실을 두레방은 현장에서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항상 앞서가는 활동을 해왔던 두레방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본 영화 <늑대와 춤을>에서 '주먹 쥐고 일어서' '머릿속의 바람' 등 인디언식 이름이 아주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늑대와 춤을>은 늑대와 춤추는 주인공 케케빈 코스트너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처럼 언젠간 가부장제를 훌훌 벗어던지고, 기지촌여성이라는 굴레를 모두 벗어던지고, 과거를 모두 끊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우뚝 선 언니들과 진정으로 자유롭게 춤출 날을 고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토론 2**

---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 토론 2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 1. 특별법 제정 경과

한반도의 분단 역사 만큼이나 오래된 미군위안부 문제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은폐·금기시 되었고, 여성운동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진보적인 여성계조차 터부시, 백안시하던 분위기는 200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2008년 12월 29일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기지촌 미군위안부 인권단체가 소속된 한소리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변 여성위원회 등이 주축이 된 (가칭)‘기지촌여성과 함께 하는 여성연대’는 기획회의를 통해 미군위안부 문제를 여론화하기 위한 방안, 즉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 신청, 기지촌을 관리했던 미국과 한국의 과거 문서를 조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실태조사 요청,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방문과 조사 요청 등을 활동방향으로 정했다.

이어 2009년 2월 19일에 개최된 ‘기지촌 여성 문제에 대한 단체 워크숍’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세션을 통해 국내외적인 책임의 법적 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용, 미국의 책임과 유엔 인권보장제도의 활용(이상 조시현 교수),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 현행법 해석을 통한 기지촌 여성문제의 해결 가능성, 입법 방향에 대한 소고(이상 원민경 변호사) 등이 발표되었다. 초보적인 단계지만 국가배상과 입법 논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한동안 논의가 뜸하다가 2010년 12월 8일에 (가칭)‘기지촌여성인권연대’ 소모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단체 출범과 활동방향이 논의되기 시작, 두레방과 햇살사회복지회, 한소리회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미군위안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기로 결정하여 법률팀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법률안은 ‘기지촌여성인권연대’<sup>1)</sup>(2012. 8. 31 출범) 이전인 2012년 4월 7일에 법률팀에서 작성하여 전체 회원단체들에 회람되었다. 제목은 ‘기지촌 성매매 피해 여성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미군위안부’ 표현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현장단체들은 외국 국적 여성들을 대상에 포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기도 하였고, 이후 여러 번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안되어 19대 ‘기지촌 여성 인권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14.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017.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1대 제목 동일(2020,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로 이어졌다.

## 2. 정명(正名)의 문제

기존의 표현인 ‘기지촌 여성’은 기지촌에 살던 모든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미 대한민국 법령과 공문서에 등장하는 ‘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굳이 ‘위안부’에 따옴표를 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보다 먼저 공적으로 사용되었던 미군 위안부는 이제 원래 불리었던 이름을 가져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군사주의에 의해 유린되는 여성의 인권문제라는 측면에서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와 마찬가지로 미군 성노예제문제라는 표현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공문서에서 미군 위안부가 아무런 제약없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던 이유는 일제 강점기 공창의 역사 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운영한 전장의 위안소 제도를 온 몸으로 체화시킨 박정희, 백선엽, 정일권 등 일본군, 만군 출신의 정치군인들이 창군기 이후 한국군의 중추를 이룸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었다. “군표와 달리는 동일하다. 기지촌 할머니들은 달리를 군표라고 불렀다”는 증언은 이를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다. 미군위안부 문제는 군사주의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 군사화된 성매매 문제, 여성혐오적 폭력이다.

1) 결의문,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기지촌여성들의 인권회복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미군 주둔으로 인한 성매매와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폭력이 재생산되는 구조에 반대합니다. 국제적인 성매매 공간이자 결혼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재의 기지촌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인종·성별·계급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1)한·미 정부 상대, 개별 또는 집단소송 제기 2)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 3)생애사 수집·정리·출간 4)국제연대 도모 5)대국민 홍보 실시

### 3. 국회의 입법 부작위의 문제점과 절박성

100% 동의. “고령의 피해생존자들은 시간 지체 시 침해된 인권회복이 불가능해지므로 기본권 침해의 절박성이 인정된다”

피해생존자들과 현장단체들의 7년 여의 투쟁 끝에 어렵게 통과된 경기도 의회의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0. 4. 29) 역시 경기도 집행부의 대법원 판결 부재와 상위법 부재를 이유로 한동안 무력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현장단체장과 도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2021년부터 2년간 운영된 1기 ‘기지촌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인 경기도 여성정책과/국과 회의 개최 시 수 차례 언성을 높여야 했고, 다시 시작된 2기 위원회에서는 대법판결에 따라 원고로 참여한 피해생존자에 한해, 그것도 중복수급금지라는 전제로 현재 대상자를 파악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집행부 보고를 들을 수 있었다. 상위법인 국회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지자체를 상대로 애써 마련한 조례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다.

### 4. 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의 검토 보고서

발제자 지적대로 여가부와 외교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여가부와 외교부의 의견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인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장관이 재직 중인 여가부의 의견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영향만을 우려하고, 자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부인하는 외교부는 어느 나라 정부 기구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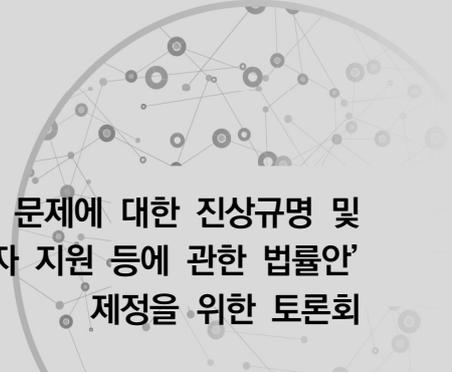
### 5.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발제자의 의견, “인권적·젠더적·역사적·평화적·사회적·법적 관점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의 회복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역대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과거사정리위원회들의 기계적 구성의 폐해를 타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원래 목적인 바의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원칙이 손상된 타협안으로 누더기법이 되는 것과 위원·상임위원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롤러 코스터를 타듯이 교체되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목도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과거사정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 6. 결론 : 동의

국회의 관련 입법 의무는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로 전화했으므로 국회의 관련 입법 부작위는 헌법위반이다.

국회의원들은 희망고문하지 말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토론 3**

---

**장석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과장)









# 부록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91
----------	------

발의연월일 : 2020. 12. 17.

발 의 자 : 정춘숙·강민정·권인숙  
김상희·김윤덕·윤미향  
윤후덕·이규민·이용빈  
장경태 의원(10인)

## 제안이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가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음.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으로 기지촌 여성들은 강제 검진·구금·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이들의 자녀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 성장하였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주한미군기지촌”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여구역,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를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국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성병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라.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등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바.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군위안부문제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 사. 국가는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서 주택으로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피해자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적 회복 및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피해자등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국적회복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관한 위로·추모 및 역사관·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 등 기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피해자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미군 위안부 문제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3조).

법률 제 호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 문제와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기지촌”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여구역,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주류판매·유흥행위 및 접객행위의 영업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및 같은 법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을 말한다.
2. “미군 위안부 문제”란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성병검진 및 치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통칭한다.
3. “피해자”란 미군 위안부 문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서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장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 ①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사항
2.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피해자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피해자등의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장례비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7. 피해자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 및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군 위안부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불이익의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제10조(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11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 본다)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군위안부문제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피해자들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들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제13조(재심의)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들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장례비의 지급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입주지원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이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명예회복 사업 등

제14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保障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 중에서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등에게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활지원금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그 밖에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례비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례비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택의 우선 공급 및 입주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의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적 회복 및 정착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피해자등 중 대한

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원할 경우 국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피해자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국내 정착을 원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적 회복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등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국적회복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피해자 지원시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4.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5.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7.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8.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9.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하여야 한다.

1. 피해자등에 관한 위로 및 추모 등 기념사업
2. 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관 및 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사업

3. 그 밖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기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미군 위안부 문제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26조(지원금의 환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등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5-19 조례 제 66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9월 8일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경기도 내 주한 미합중국 군대 기지촌 여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지촌 여성”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주한 미합중국군대(이하“미군”이라 한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을 말한다.
2. “기지촌”이란 미군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유흥행위 및接客행위의 영업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미군이 주둔하였던 지역 또는 그 일부가 생활하였던 지역 중 경기도 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기지촌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도지사가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센터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신청 및 결정)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친족 및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등 지원대상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임대보증금,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2.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3. 의료급여

4. 간병인 지원

5. 장례비 지원

6. 그 밖에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보장) 도지사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기지촌 여성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준용)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7.10 조례 제16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9월 8일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파주시 내 주한 미합중국 군대 기지촌 여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과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지촌 여성”이란 국적에 관계 없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미군”이라 한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을 말한다.
2. “기지촌”이란 파주시 관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미군이 주둔하였던 지역 또는 그 일부가 생활하였던 지역으로 미군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유흥행위 및接客행위의 영업 또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지촌 여성의 복지 향상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①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선정
2.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 및 방식, 지원사업 등
3. 지원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4. 그 밖에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 2. 그 밖에 기지촌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파주시 기지촌 여성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1.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안정 지원
- 2.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3. 간병인비 등 의료비 지원
- 4. 장례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인권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기지촌 여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부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②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기지촌 여성 지원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지촌 여성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준용)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2020.7.10.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